

제418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고민정 위원 서면동의)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에 대한 공청회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 |
|--|----|
|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고민정 위원 서면동의) | 3 |
|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에 대한 공청회 | 5 |
| o 현안질의 | 33 |
|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38 |
| 4.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 38 |
|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 38 |
| 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 39 |
| 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 39 |
| 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 39 |
| 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 39 |
| 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 39 |
|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 39 |
| 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 39 |
| 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
|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39 |
| 1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 39 |
|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 39 |
|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
|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 39 |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 39 |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 39 |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 39 |

| | |
|---|----|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
|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 39 |
|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 39 |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 39 |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

(14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잠시 전에 현안이 좀 있어서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 예정된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번안 의결하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종료 후에 최근 많은 매체로부터 보도되고 있는 연세대, 국립부경대, 동덕여대의 현안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의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고민정 위원 서면동의)

○위원장 김영호 1 2024

() .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20일 고민정 위원님이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서면으로 번안동의를 제출했고 현재 감사요구안이 반려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고민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지금 배부된 감사요구안 원안 중에서 주문 4항 ‘전문위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과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요구’ 부분을 삭제하여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본 5건, 통과된 5건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와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연기를 요청했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5건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감사요구안이었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감사요구안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여야 간사 간에 병합해서 여야가 합의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번안하고자 하시는 감사요구안이 저희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니까 혹시 팬찮으시면 이 안건을 맨 마지막으로 변경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마지막에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단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주문 4항 요구사항 삭제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였고, 지난번 본회의 때 공식 상정됐던 부분을 무리하게 간사님의 요청을 우리 야당에서 반영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문정복 간사님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훈 위원 오늘 순서만 좀 바꿔 주셔서……

○문정복 위원 안을 좀 주세요, 먼저.

○조정훈 위원 예, 제가 저희 안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합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조정훈 위원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

○문정복 위원 순서만, 제가 먼저 안을 받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가결을 조금 지연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고민정 위원 사실 4번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여당 측에서도 또 국교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을 한명 한명씩 설득해 가면서 겨우겨우 이 4번 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까지 다 발목 잡히는 게 된다면 그냥 원래의 다섯 항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노력이나 혹은 여당 측과 앞으로 여야가 합의하에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 버리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야당 위원들을 설득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려서, 간사님들 간에는 서로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다시 4번을 뺄 것을 요구했던 개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고민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걸 지금 다 논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수용할 건 수용할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의논할 사항이 있는지를 짚어보자는 의미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하고 나중에 결국 가결하자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상임위 과정 속에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이 아마 일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야당 각각의 일

정들이 좀 있다고 제가 파악이 돼서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간사 간에 협의를 추후에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다섯 가지 안 중에서 고민정 위원님의 삭제 안이 포함됐으니까 5개가 4개로 줄어드는 건데 여당 위원님들은 그중의 1개 정도를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이시거든요.

○**문정복 위원** 잠깐만 정회시켜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처리해야 되거든요. 문정복 간사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술인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 10분 정도……

○**문정복 위원** 예, 10분 정도……

○**조정훈 위원** 3시까지만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3시까지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3시까지 시간을 드리되 3시에는 확정이 되면 의사진행 듣지 않고 바로 확정된, 여야 간사님의 확정된 안으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동의해 주십시오.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상임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지금 배부된 감사요구안 원안 중에서 주문 4항 ‘전문위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 요구 부분을 삭제하여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에 대한 공청회

(14시5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성준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 11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관련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추후 자료제출을 전제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일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유선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제출은 물론이고요 열람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임태희 교육감이 김영호 위원장께 자료제출과 관련해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회를 기망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일입니다. 기관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 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혹시 여기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시군요.

사실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박성준 위원님이 자료 요청 건을 했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박성준 위원님에게는 열람은 시켜 드리고 공개하는 것은 좀 난감해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하여튼 열람은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새로 경기도교육청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만약에 이행 안 하신다면 제가 말씀 주신 것대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열람이, 임태희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열람을 시켜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의 약속이 이행된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원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요.

위원장실 보좌진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오늘 새로 박성준 위원님에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료 열람을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의사봉을 제가 두들겼고요.

위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9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소위원회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도시 지역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을 유연화·다양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내용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진술인분들께서 한 40분 정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연취현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이현영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공동대표입니다.

이화룡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인사)

바쁜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이어지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과 조훈희 지방교육재정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진술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각자 10분 안에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수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서울 지역 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4년 106만에서 2024년 76만으로 줄어들었으며 2030년에는 5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4년도에 대비하여 2030년도에 약 46.9%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과 분교화 및 학교급 간 통합 운영 등 학교 운영의 종합적인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지역의 학교, 학생 수 및 소규모 학교 현황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총 35개 학교였는데 올해 2024년도의 경우에는 169개 교로 총 134개 교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 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역별로는 학령인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특정 지역은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쏠림으로 과대·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생활권역별 정비 사업 추진 세대 및 학생 유발 현황을 보면 동남권의 학생 유발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추진 세대 및 학생 유발 현황을, 2030년까지의 예측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의 맨 왼쪽 전입 학생 수를 보면 서울 지역의 총 전입 학생 수가, 일종의 유발 학생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6만 2000여 명, 중학생의 경우에는 3만 2000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중 동남권—동남권이라고 하면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를 말합니다—지역의 초등학생은 2만 3000여 명, 중학생은 1만 4000여 명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여 과대·과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대·과밀학교 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유발하며 서울 내에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 배정 갈등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분포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교육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학생 쏠림에 따른 과대·과밀의 해소 및 이를 넘어서 학교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라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캠퍼스 추진 정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에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학교의 본교와 캠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분교의 명칭을 행정상 도시형캠퍼스로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안한 도시형캠퍼스 모델은 총 2개 유형, 6개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모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개편형으로,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소수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통폐합 이전 단계의 완충 기능을 하거나 캠퍼스로서 소규모 형태를 유지하는 운영 방식으로, 기존의 분교화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설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정규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통학 여건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 신설형 모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형캠퍼스 학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형 중 제2캠퍼스 학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발 학생 수요가 정규 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정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그보다 작은 형태로 설립하는 모델인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동구 지역 고덕강일지구 내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는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성, 다양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를 법률에서 개편형, 신설형으로 명료하게 규정하였고 추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및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 등 운영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본교와 동일 수준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특별법안은 도시와 인구 증가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기존의 학교 설립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학생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형과 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검토할 것이며, 도시개발 상황과 통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취현 위원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연취현**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너무 존경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우려 사항, 혹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점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아까 이전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시설·설비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을 통해서 조례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에서도 똑같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규정을 완화하고 법률을 특별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기본 내용과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법률의 상충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과 또 초·중등교육법 50조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분교 설립, 고등학교 분교 설립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정합성 차원에서 본다면 초·중등교육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근거를 정하고 대통령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법률의 정합성을 두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필요성이 있으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기본법의 틀을 바꾸는 흐름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법률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분교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후에 사립학교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든지 법률 개정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금 이 법이 2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만 고민이 들어 있는데, 사실 대도시의 경우에 지금 분교 설립의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 법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교 통폐합이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 2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몇몇 학교의 급격한 필요성에만 의거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분교 설립에 대한 모델이 되고 예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시 모델이다 혹은 이것이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법안 시행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환경 질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시설이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 교육환경의 질이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간이한 학교가 아니라 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완비된 가까운 학교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의 필요성이나 이 기준을 완화하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당 법안에 보면 필요한 경우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동일하게 하되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원거리 통학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형캠퍼스가 필요하다면 고학년이 되면 원거리 통학을 학교의 취지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상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려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교직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교직원이나 교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이 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일응 의거해서 그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시형캠퍼스 법안에는 이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교직원이나 교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10조에 별도 정원으로 교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원 자격에 대한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

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교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직원 처우나 근무 조건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운영상의 효율성인데요. 서울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사실 도시형캠퍼스는 그 학교만의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본교에서 운영하고 다시 도시형캠퍼스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서 과연 효율적인 구조인지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규모나 유형에 대해서 예상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의 재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후에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재정 부담에 대해서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고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재정 부담 부분 그 외의 세부적인 기준이 먼저 한 번 더 논의되고 추계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추가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화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책 페이지로 22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안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한번 잠실중학교, 지금 문제 되는 과밀학급 문제가 나오는 두 학교 정도만 뽑아 봤습니다. 잠실중학교와 강현 캠퍼스가 나오는 상일동 부분에 대한 인구 추계를 뽑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잠실중학교에 배정 가능한 송파구 일대 학생들 수가, 2009년부터 2011년생입니다. 제가 드릴 때는 이게 다 컬러여서 색깔을 좀 구별할 수 있었는데 흑백이라서 좀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밑에 칸에 2009년부터 2011년생은 지금 현재 2514명이고요. 2029년이 되면 동일 지역의 중학생이 되는 학생 수가 2686명으로 지금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9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학생 수가 정말 절벽처럼 감소하는데요. 1823명이 되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정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상일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연령대 학생 수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029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2030년부터 초등학생이 되는 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확 줄어서 3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지역으로 더 유입되는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구 감소의 현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몇 년만 지나면 오히려 이 학교 또한 통폐합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의 과밀학급과 추후의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학업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23페이지에 인용해 놨는데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라서 경제학자께서 분석하신 KDI 연구보고서를 통으로 실어 인용해 놨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부터 키워드 몇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크기는 학생들의 각 영역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보다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수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당 학생 수는 읽기와 수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과학 영역의 학업성취도는 오히려 교원당 학생 수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분석 결과로는 교원 일인당 학생 수의 개선은 교육 성과를 제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각종 통계들을 들어서, 여기 보시면 PISA의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을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료를 다 실어서 이런 내용을 나타냈는데 제가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소규모 학교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24페이지 하단에 2024년 서울시의 심미경 의원께서 정책 연구자료로 발간하신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논문들을 여러 개 인용하셔서 제가 같이 재인용했습니다만 규모가 적정 인구에 미달하는 학교인 경우에 공동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한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단위 학교의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교육의 목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안도 적어 봤습니다만 아까 KDI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먼저 일어났던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초등학교가 4km, 중학교가 6km 이내로 정해져 있던 통학 거리를 좀 늘려서 통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통학버스를 도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이런 방안도 한번쯤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원당 학생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선생님을 좀 늘려서 가르치셔야 하는 학생 수를 줄이시고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제정될 때 이런 우려점에 대한 보완점이 같이 고민이 된 상태에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을 여유 있게 하셔서 우려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법안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대표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현영 저는 학부모이면서 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상임위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논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당 법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캠퍼스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갈등과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관련된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나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충분한 논의 없이 좀 급하게 법제화되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본교와 분교 간의 차이와 갈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도시형캠퍼스이지만 서울시에서 전 조희연 교육감께서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 2029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부모들에게는 이미 벌써 이게 이제 분교구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교육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학부모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교사의 채용이라든지, 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연취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본교의 공동급식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급식을 하겠다, 그것도 이동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학습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분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부모들 역시 분교 추가 운영으로 인해 학교의 전반적인 질 저하나 교육 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몇십만 명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교 학부모들은 교육시설 및 교육 기회의 차별에 따른 불만이 그냥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위낙 학구열이 높으시잖아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학교 명칭을, 제가 알아 보니까 학교 명칭을 둘러싼 본교와 분교 학부모들 간의 여러 논쟁과 갈등은 당연히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교를 어디로 지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B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A와 C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학교를 본교로 지정하느냐 이거로 인한 논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본교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의, 본교의 이름 명칭을 다른 데 어느 지역에서 분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을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교육행정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학교에서도 불필요한 논쟁과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체육장, 이제 운동장의 축소이지요. 이것은 아이들의 놀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학교에 비하여 규모가 축소되어 신설 설립 또는 개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이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특히 체육장 시설 기준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소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로서도 무척 중요하게 고려하는 교육환경인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런 범위나 제한도 없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부동산 사업의 부당성입니다. 아까 앞서 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5쪽에 보면 유형이 개편형, 신설형이 있습니다. 신설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예를 들면 신설형의 유형 3번, 4번 같은 경우 캠퍼스를 할 필요 없이 운동장이 그래도 작게나마 있다면 그냥 학교 이름으로 학교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하면 오히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5번에 보시면요 주교 복합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연 교육감께서 계획을 하신 건데요. 이 주교 복합형은 결국은 학교의 부지를 어떤 일부를 매각을 해서 결국 경제적 수익을 보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유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자유,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교육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오히려 매각을 해서 SH나 LH나 이런 데에 매각을 해서 그 수익으로, 또 민간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과밀지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경제적인 수익에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 학교를 이렇게 다시 또 다른 악순환이 되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험적 운영 및 분리 운영 법제화 우려입니다.

도시형캠퍼스는 단순히 서울 수도권과 같은 지역 현상에 맞춘 물리적인 학교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 방안에서 조차도 기존 학교와 전혀 다른 학학적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자치회 같은 건데요 최근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께서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료에 포함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재정의 요구에 ‘성중립 화장실은 학생들이 찬반을 나눠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이며 지도자료에 포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는 현행법에 반한 성중립 화장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치회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 찬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일례로, 제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커터칼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칼로 한 20cm 다른 친구의 팔을 그었습니다. 학폭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전혀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전자담배 마약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조례일 뿐이었음에도 이 정도로 강력히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데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안전권, 건강권의 침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으로서 초등학교 신설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이것을 대안

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학교를 직접 다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감이나 교사, 교육감 등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현 또는 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규 설립 기준을 오히려 관련된 법을 시대에 맞게 또는 지역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령기 아이들에게 정말 지역 내에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학교다운 학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회는 원활한 학교의 신증설과 또 폐교 자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룡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화룡 광주대 명예교수 이화룡입니다.

우선 도시형캠퍼스가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지요. 서울은 조금 예외입니다만 경기도, 인천, 부산, 광주 지역에 가 보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지어 놨던 어떤 공동주택에 처음에는 1000명으로 계획했던 한 초등학교가 지금 5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좀 있으면 30% 정도 빠진다고 그러니까 한 200명까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학교들이 다 소규모가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걸 다 재구조화하든지 통폐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도시형캠퍼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사업이 지금 대규모에서, 신도시나 이런 거에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에서 학생 수 유발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들이 지금 우리 학교를 옮아매고 있는, 설립하기 위해서 법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옮아매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캠퍼스가 그런 첫발을 걷는 법령이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보면 위의 서두는 빼고요 효과성하고 우리 과제에 대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도시 지역에 작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잠실이나 둔촌 재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 후에 증가하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립 요건이나 시설 기준에서는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균형 배치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교 설립·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둔촌동에 이번에 세웠던 도시형캠퍼스가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보면 임대형도 있고 외국에는 보면 운동장 없는 학교 또 아파트 내 1층에 공동주택 1층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할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보트 학교가 있습니다, 보트 내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기업에 내에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부지에, 땅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학교의 개념은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쿨 위드아웃 스쿨(school without school)이지요. 꼭 스쿨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초·중등법이라든지 고등학교 이하 각 설립운영규정이라든지 또 중투심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초등학교는 24학급 이상이 돼야 되고 중학교는 36학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틀이 있어요. 그런 틀을 깨지 않고는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학교 유형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운동장이 있어야 돼, 운동장 규격은 이만큼 돼야 돼, 여기에 얹매이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한테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래서 교육청마다의 특성, 지역 사회의 학생 수 증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양한 설립 기준이라든지 운영 형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게 이 법의 가장 큰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대도시 기존 학교에 대한 재구조화가 굉장히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건데 급속한 이런 지역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학교들이, 옹기종기 한 20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씩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다 소규모화 됐을 때 그 학교를 다 폐교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럴 경우에 도시형캠퍼스를 학교군으로 만들어서 거점학교를 두고 그걸 공간적으로 하나의 캠퍼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형캠퍼스를 그런 형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리니티 칼리지나 크라이스트 처치 같은 여러 가지 칼리지를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같은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꼭 이 형태는 아니겠습니다. 이 도시형캠퍼스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법과의,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법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 규정이 가지고 있는 시설기준 용지기준 그리고 학교용지 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용지에 관한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법들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상충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형캠퍼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분교, 새틀라이트(satellite) 위성학교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린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환경 기준에 대한 것도 시행령을 하실 때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학교를 또 신설하겠다고, 도시형캠퍼스로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민원에 휩쓸려서 계속 짓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결과 단계적인 의사결정을 한 후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도시형캠퍼스 정책과 법안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진술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이 두 분은 도시형캠퍼스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또 두 분의 진술인은 조금 이 도시형캠퍼스 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아까 이현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 난개발 가능성도 좀 있어서, 사실 그런 점도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믿는 것은 도시형캠퍼스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교사 선생님 학부모라는 것이지요. 이 세 공동체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때 도시형캠퍼스의 추진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하고 우려하셨던 목소리들을 저희가 잘 담아내고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더 성숙한 학교공동체가 조금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늘 걱정의 그런 마음은 저희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연취현 위원님, 이현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많은 것을 제가 또 느끼고 배우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입니다.

누구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동네가 경기도 시흥시라는 곳인데 인구가 한 10년 만에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30만에서 지금 현재 58만, 급격하게 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게 초등학교 신설 문제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신설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육부 중투위가 거의 완전히 권력 기관화 돼 가지고 학교 하나 짓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구도심 내에 아파트를, 공장이 있던 부지를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한 2080세대 정도 들어왔어요. 208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부지도 받아내고 건축비까지 다 받아내서 한 550억 정도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학교를 못 지었어요. 학교를 못 지었는데 못 지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들이 1km나 되는 기존 학교에, 인도도 없는 길에 그리고 차들이 막 왔다갔다 하는 길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전부 플라스틱병 들고 교육청 몰려간 거지요. 그래서 해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좀 더 가까운 학교에 재배치한 건데 그 재배치하는 학교의 엄마들은 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가뜩이나 과밀학급인데 그 아이들까지 받아서 더 과밀이 되는 거예요.

신도시에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도시형캠퍼스는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서울에 적용되는 학교의 예이지만 수도권 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형캠퍼스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받아낸 부지를, 기부채납받은 부지를 도시형캠퍼스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소래초등학교의 분교 형태로 갔으면 정말

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배치된 학교에서 눈치도 보이고 아래요.

그래서 이 도시형캠퍼스가 갖는 구조적인 걱정거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아이들의 안전. 힘든 통학로를 가거나 아주 불편한 통학로를 가거나 과밀학급에서 좀 떼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만들어 줘야 돼서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 설립 기준이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아래요. 이게 언제 규정된 건지 이현영 학부모회장님 아시나요?

○진술인 이현영 아니요, 그것은……

○문정복 위원 모르시지요?

○진술인 이현영 예.

○문정복 위원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급 수 36학급을 금과옥조처럼 알아요. 그런데 36학급 있다고 좋은 학교 아니고 12학급 있다고 허술한 학교 아니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작게 세분화돼서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학급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학급 수 많으면 뭐가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말씀하신, 우려하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밀이어서 분교, 그러니까 캠퍼스로 만드는 학교들의 경우는 그 인근에 어마어마한 공적인 체육 인프라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우선 배정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다 내놓을 주민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진일보하는 학교의 형태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서울보다는 인구가 급격하게 소멸하는 지방에 더 먼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서울 사례로서, 서울시의회 서울시 조례로써 정리를 하겠지만 더 급한 것은 저기 경북 같은 데 인구 완전히 소멸이 돼서 아이 서너 명 있는 데 이런 데 적용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형캠퍼스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것이 정리되었을 때 수많은 도시의 각기에 맞는 환경에 따른 조례들이 제정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순기능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그다음에 조정훈 간사님, 고민정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을호 위원 우선 네 분 진술인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생들이 본교와 도시형캠퍼스 중 어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차관께서는 학생 배치 관련 이슈는 교육감이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강제성을 배제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학생 선택권과 학습권 보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수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의 답변처럼 도시형캠퍼스에서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감 강제성을 배제하고 학생 선택권 보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진술인 박진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학교급별로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형캠퍼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 그리고 과대·과밀 해소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라고 하면 통학 거리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저희가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요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선택권보다도 우선 통학 거리를, 도시형캠퍼스 설립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학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달리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의 경우도 상대적 근거리 배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하에서 개별적으로는 도시형캠퍼스가 신설되는 학교의 현황, 그 지역의 수요, 학부모들과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혹시 있나요?

○진술인 박진수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아이들의 통학 여건들이 우선시 돼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지만 법령상 원칙이 선택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그것도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그 도시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캠퍼스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시·도교육감에게 좀 재량 여지를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룡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형캠퍼스가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 유용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동시에 학생들의 적정한 학습환경 보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신 것 같은데 도시형캠퍼스가 학원과 같이 좀 제한적 교육환경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령이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진술인 이화룡** 시설 면적에 대한 것은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어떤 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조례로 지금 다, 그것은 규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시설기준에 보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실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형캠퍼스 법령에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령을 만들면 적정한 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 이런 것의 하한선 정도는, 어떤 환경에 대한 실내환경이라든지 급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담아서 쾌적한 학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정을호 위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술인 이화룡**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형캠퍼스가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이화룡**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는 정규 학교와 좀 다른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조례에 정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사항들, 그러기 위해서 혹시 보완할 사항들이 있나요?

○**진술인 이화룡** 환경에 관한 문제와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이게 주교복합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주거 환경과 학교가 같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우려스럽지요. 지금은 운동장이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만약에 임대형이라든지 주교복합이 돼 버리면 아무나 침입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 다 질의했고요.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 진술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좀 참고하여 가지고 좋은 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도입하고 있는 법이라 공청회까지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성급하지 않게 사회적 합의가 있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조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의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참고인님?

○**위원장 김영호** 진술인.

○**조정훈 위원** 진술인님, 서울의 경우 도시형캠퍼스법이 도입되면,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진수** 현재 추진 중인 현황이요?

○**조정훈 위원** 예.

○**진술인 박진수** 현재 2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만약에 이게 법이 되면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조사나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박진수 그렇게까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위원장님이 교사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교육감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박진수 예, 학교 설립권이 기본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도시형캠퍼스를 만들지 말지는 교육감의 전권이지요?

○진술인 박진수 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정훈 위원 교육감이 승인받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만드는 데, 법적으로?

○진술인 박진수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제도를 갖추고 있고 특정 금액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의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교육감이 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학생의 선택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먼 거리의 본교를 다닐 래 가까운 거리의 도시형캠퍼스를 다닐 래, 이것 중요한 결정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배정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통학 기준 근거리 기준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학생의 선택권이 증가가 됩니까, 배정인데?

○진술인 박진수 잠깐 말씀을……

○조정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하시는 것은 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술인 박진수 제가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도시형캠퍼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형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정하게 학생들의 수요가, 저희가 표현할 때는 학생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유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우고 5개년치를 예상하기도 하고 그 이상도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향후 지속적으로 학생이 유발될 것이다 학생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또 지역으로부터도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형캠퍼스도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인 투자 심사도 거치고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정부의 심사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시·도의회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적정한 경우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적당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끊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운영이 다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시홍시의 어떤 학생이 지금 여러 이유로 도시형캠퍼스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과거에 전통형이라고 부를까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 갈 수 있는 학교로 가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진수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거리 지역에……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진수 학생의 선택권과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반대로 선택권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대표님들, 연취현 변호사님의 얘기가 맞아요. 내가 특정 지역에 갔는데 나는 조금 멀더라도 전통적인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지요?

○진술인 박진수 학부모가 그런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요구가 있으면 자기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시형캠퍼스 싫다. 그런데 억지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뭐 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까운 학교에 보내겠다, 그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학생의 선택권이라면 이것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조 3항에 보면 결국은 체육시설 기준을 자율스럽게 해 주는, 어차피 도시형이니까 결국은 공간이 없었다는 현실, 저도 서울의 마포,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대책, 아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근처에 있는 시립·구립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정된 보장 또는 답이 있어야 학부모들이 저 작은 도시형캠퍼스 보내도 우리 아이의 체육과 활동에 큰 제약은 없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현재 법에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개 지금 시범운영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서울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희 마포 지역에서는 도시형캠퍼스 얘기도 못 꺼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최소한 제 지역구는 대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저는 막지는 않지만 최소한 보장시켜 줘야 될 게 학부모의 선택권이라고 봐요. 학부모가 먼저 선택하게 해 주고 그리고 여러 이유로 다른 데 가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을 저는 이 법에, 이 배정에 있어서 그래야 학부모들의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진술인 박진수 저희가 실제로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면 실제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을 넘는 얘기지만 교육청의 학교 배정, 초·중·고등학교 배정은 한번 다 열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투명하고 이것처럼 민원 많은 내용이 없어요. 교육청이 자꾸 이것을 교육감

의 권한으로 남겨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의 거의 80%는 배정에 대한 불만이에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조차도 교육감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이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굉장히 큰 선택이잖아요. 학생들을 도시형 캠퍼스에 배정해 버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이게 도시형캠퍼스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치 않아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그 학교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장전입도 하지요, 그 해당하는 학교를 선택받기 위해서. 어쨌든 학부모가 혹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껍어서 가려면 사립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기록관님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를 않네. 잠깐만 서 주실래요? 얼굴이 아예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학교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원하게끔 만드는 첫 사례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조정훈 위원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는데 호주에 있는 학교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봤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성냥갑 모양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수가 적으냐, 교사 수가 적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나라 학교들은 다 이렇게 교도소처럼 생겼나 하는 문제 제기를 유현준 건축가가 또 하셨잖아요.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긴 할 텐데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기대감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크거든요. 얼마큼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이 일단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또 시도해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고 싶어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법에 보완 입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는 꼭 이 법에만 해당된다기보다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도 교사를 배정을 할 때는 학생 수 대비해서 교사 수를 정하는 겁니까, 박진수 과장님?

○진술인 박진수 예,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법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교와 대비해서 교사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 포함해서 본교와 다른 차별적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의도해서 본교와 분교, 도시형캠퍼스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요.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해서 교사 수를 배정한다는 거잖아요?

○진술인 박진수 기본적으로 교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

○고민정 위원 지금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술인 박진수 교육과정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배정될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학생 수 대비 교사 수를 정하다 보니까, 갈수록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목 수가 줄어들거나 학년 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몇 명 줄었다는 것 때문에 교사 수를 줄여 버리는 문제 때문에 특정 과목들의 선생님부터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합니다. 아마 교육청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급 수 대비 교사 수로 가야 다른 학교들은 물론 특히나 이런 도시형캠퍼스 같은 작은 학교들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앞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교육위 안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 학교를 복합시설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도시형캠퍼스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어찌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주민들과 학생들과의 공감대와 교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교육청 관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어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의 두 가지 제안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시겠지요?

○진술인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앓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취현 변호사님께서 왜 사립학교는 허용하지 않느냐, 공립학교만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사립학교에 만들 수 있게끔 허용해 주게 되면 그야말로 귀족학교가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신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나 심의했던 위원으로서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일단 공립학교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는 공립학교의 그 문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영 대표님께서는 체육장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도시형캠퍼스가 만들어질 거라서 그 주변에는 반드시 체육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학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운용의 묘를 활용해야 될 거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모 전문가께서는 그 운동장 문제를 1층 말고 옥상으로 또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층짜리 건물이면 12, 13은 학교 그리고 13층 옥상을 운동장처럼 쓰자는 건데 여러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도 좀 우려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강경숙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고요.

○김문수 위원 저도……

○위원장 김영호 하시겠어요?

○서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아까 신청을 안 하셨길래.

김문수 위원님 신청하실 거고.

○김문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두 분 더 신청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께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이 법의 필요성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촘촘하게 구멍을 잘 메꿔 나가고 혹시 역기능적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박진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 여러 필요성 말씀하셨고 연도별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 학교가 2014년 대비해서 2022년도 84개 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의 압박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동남권,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오히려 학생 쏠림이 있고 배정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학령인구 급감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모순적인 현상 속에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통폐합 문제가 상충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술인 박진수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에 도시형캠퍼스 법안의 취지……

○강경숙 위원 취지지요.

○진술인 박진수 법안이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 지역에서도 작은학교가 늘고 있고, 그래서 통폐합 압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은 학교가 갖는 장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통학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저희가, 정부에서도 특히 교육부에서도 적정 규모 육성 정책이라고 해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통합학교, 통합운영학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음학교라고 하는데요. 학교급 간 통합 운영하는 학교들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아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대책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된다면 결국 통폐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개발은 대부분 고밀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면적 대비 학생 유발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2개의 유형 6개 모델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초풀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거기 짧은 세대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모델 중의 하나가 개편형 주교

복합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주거지와 교육 학교, 주교복합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가 기대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의 학교인 그곳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 이렇게 문제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영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덕상일3지구 거기에서 고덕, 강동이지요. 거기서 주민 98%가,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가 다음에는 98%가 또 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요.

○진술인 박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분교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학생 유발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캠퍼스 신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학생 수 유발로 인해서 통학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수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통학 여건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기존 학교가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중첩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지역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많이 찬성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술인 박진수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은 반대가, 학교 신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규학교 신설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의 학생 추계로 봤을 때 정규학교 신설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정규가 어려우니 도시형캠퍼스는 어떤지, 저희가 당시에 정책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동의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답변됐습니다.

두 번째로 연취현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꿈꿔하게 잘 따져서 확인해 주셨었는데 아까 그 사례를 보실 때 일본의 경우에 통학거리 기준을 초등학교 4km 이내, 중학교인 경우는 6km 이내에서 통학시간 1시간 이내로 수정한 경우를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경우를 특별법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도 해주신 건데 이것이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진술인 연취현 저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부모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사실,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지만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학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래서 서울시의원님의 정책자료도 제가 일부 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통학거리를 500m에서 1km로 만들려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교로도 통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그 안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는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 때를 대비하면 여러 대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숙 위원** 법이 시행되면서 연취현 변호사님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의견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 리모델링 사례도 있고요. 영국도 보면 주거용 건물 단지 내에 학교 설립한 사례도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원격교육학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하고 뉴타운 지역과 같은 대규모 학생이 유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학교 모델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진술인 연취현** 제가 어제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교육 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특수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 나왔던 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와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 뒤의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많은 엄마들과 상의해 보면 우리가 사실 사립학교도 많이 있고 더 좋은 대안학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와중에 공교육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목표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공교육을 고집하고 있는 많은 엄마들에게 학교가 다른 외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교육을 지켜 왔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운동장을 줄이고 공간 문제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또 이런 견해에 대한 경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영 대표님께서는 아까 운동장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운동장 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이런 공간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업 위주의 인지적인 영역에만 되게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애들의 체력이라든지 여러 사회성, 함께 연대를 하기 위한 협력의 그런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체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하여튼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 조금 듣고 싶기는 합니다.

○**진술인 이현영** 아까 대안은 제가 마무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있는 초·중등학교 신설에 대한 법이 아까 위원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지 잘 허가받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이화룡 교수님께서 외국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저희도 외국 생활도 해 봤지만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그들이 굉장히 반하는 게 바로 이 운동장입니다.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장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선진국을 따라가서 꼭 운동장을 없애고 그렇게 오피스텔형으로 한다든지 그건 사실 우리나라의 대형 학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학교를 공교육을 그만두고 엄마들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봐 가지고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강점이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정말, 실제 학교를 가 보면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언제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에 합니다. 수업 마치고요 수업 시간 딱 종 맹 치면 미친듯이 운동장으로 갑니다.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요구인 거예요, 실제 공립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강점을 살리는 그런 학교로 신설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항상 대척점에 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그런데 사실은 운동장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이라든지 함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부족한 것은 또 기존에도 그렇기는 합니다. 단지 공간이 없어서의 문제 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근의 추세 자체가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진술인 이현영 그렇지요.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쉬는 시간에, 10분 15분 쉬는 시간, 요즘에는 또 이제 블록형이라고 그래서 20분간 쉬는 시간도 있거든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신체적 발달에 그 시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공감합니다.

이화룡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아까 외국의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외국 가면 도시형캠퍼스가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교들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많이 그러는데 아까 그 사례도 많이 들어 주시긴 했는데 대도시의 기존 학교들을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캠퍼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학원과 같은 개념으로 될 수 있는 소지는 혹시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본교와 도시형캠퍼스가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렵게 되면 학교 간의 격차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화룡 운동장이 있어야 되지요, 저도 운동장 없는 학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재건축하고 잠실이나 이런 경우에 작은학교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운동장 없는 학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운동장이 우리 교육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은 꼭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학교 운영,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정규학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그런 작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우리 과제에서도 보면 그런 보완 사항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꼭 도시형 캠퍼스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작은학교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도 되고 또 기왕의 학령인구가 줄어들 때 오히려 작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 때는 한 학급에 60명씩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30명, 20명. 저희들이 사교육을 하고 과외를 하고 이런 게 다 결국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 원하고 학생 나에게 가급적이면 맞춰 주기를 원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이 저절로 가니까 저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좋겠다, 다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지요. 학교 하나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다 배워 버리면 되는데 여러 학교로 흘어지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오히려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하여간 거리가 가까운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 하더라고요. 순천이라는 곳에도 소위 명문 학교라고 하는 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도시가 생겨 가지고 가까운 학교가 명문 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30년 만에 고향에 가 보니까 그 전에는 멀었어도 소위 명문 학교를 부모님들이 거기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고 일부러라도 보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냥 내 곁에 가까이에 내 아이가 다니는 것을 학교에 운동장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장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작은학교를 오히려 좋은 교육의 기회로 잘 삼고 또 도시형캠퍼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도 보면요 신도심과 구도심이 삼사십 년 단위로 재개발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 때 제일로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학교용 부지를, 지금도 용지부담금 그래서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보존해 놔야 30년 뒤에 신도시에 갔다 그분들이 다시 구도심으로 또 재개발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의 학교 부지를 남겨 놓고 작은학교를 남겨 놓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사십 년 뒤의 예측을 못 하고 다 신도시로 이사 가서 그 비싼 땅, 교육청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새로 사 가지고 학교 짓는 데 예산 낭비, 또 기존의 학교 그대로 보존해 놨으면 새로 구도심 개발할 때 오면 되는데 그 학교 없애 버린 바람에 그 땅을 다시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봤을 때 도시형캠퍼스를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립이나 선진국처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런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아까 진술하시는 내용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대체 과소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대체 도시형캠퍼스를 도입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가, 앞으로 과밀학교가 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모순된 관점에서 제도 도입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 두 가지의 상충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시형캠퍼스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박진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과소학교의 해소 문제나 과밀학교의 해소 문제나 양측을 다 갖고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제출해 드린 원고 안에도 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도시형캠퍼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편형 모델이어서 개편형 모델은 기존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작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서지영 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캠퍼스를 도입하는 가치와 목적 그다음에 효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분류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술인 박진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학교가 작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과밀되고 과대화되는 측면에서는 또 아이들의 학습권 측면이 있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 분류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오늘 얘기하신 거 보면 통학로 통학 시간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설 아파트가 초품아가 될 때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사활을 걸지요. 물론 그건 교육적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학교가 필요하나 학교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시형캠퍼스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한 아파트들에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이사를 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온천동 래미안아이파크라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교가 설립이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끊임없이 증가해서. 적정 학교 모델을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최대 과밀학급의 학교로 변하고 있어서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학교 중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이런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형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속 그 아파트에, 거주 이전의 자유로 인해 그 아파트로 끊임없이 이주해 오는 유·초등, 초중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밀집할 때 그 도시형캠퍼스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진술인 박진수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서지영 위원 정상적인 학교도 지금 과밀화되고 있는데 도시형캠퍼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 더 지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진술인 박진수 사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저희 나름의 학생 수, 학생 유발과 관련된 추계를 가지고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것도 적정하게 인구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재건축의 규모라든지 재개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한 부분에 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는……

○서지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회피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도시형캠퍼스만 그냥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교육청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도시형캠퍼스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새로 지은 학교를 다 선호해요, 가까이 있는 새로 지은 학교를. 그래서 그 아파트로 몰려드는 그 개개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그 특정 지역에만 학령인구가 몰려드는 것에 대해 대안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빙빙 돌면서 하십니까?

학생 추계가 생각하신 대로 잘 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울에도 그런 과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요, 고덕강일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들에. 그래서 도시형캠퍼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명확한 질문이지요. 그 아파트 안에서 학생 수 다 수용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술인 박진수 지금 현재 고덕강일과 관련해서는……

○서지영 위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용 못 하게 돼서 늘어났어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학생 수가 증가해 버렸어요, 예측을 뛰어넘어서.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캠퍼스 하나 더 지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보냅니까?

○진술인 박진수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인 추계를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현재 그 지역은 도시형캠퍼스를 통해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학생 수 과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추계를……

○서지영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이미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일어났지요.

○진술인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리고 저희 동래구에서도 일어나서 학교 다시 증축하고 있습니다. 공사판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학교를 지었는데도 공사판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학부모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읽어 봤는데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것마저도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설이 될 거예요. 투자는 했고 사람은 모아 놨고 학교는 설립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 의견 교육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저희가 너무나 쉽게 쉽게 어떤 것들을 도입하는 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상황들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도시형캠퍼스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취지가, 사실은 저는 한 두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 비슷할 텐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한 1967년 정도에서 75년 사이에 학교가 건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된 학교가 많았는데, 한 모델은 아주 노후화된 학교고 안전진단도 굉장히 D, E급이 나올 정도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위험한 건물을 학생들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아파트 단지로 좀 이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존치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 됐을 때 학교를 미리 지어 놓고 학생들은 옮기고, 이 학교 부지를 다시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큰 예산 없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오면 입주에도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된다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다른 사례인데 과밀학교가 있어서 또 한 단지,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미니학교라는 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소통 없이 그냥, 아마 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이렇게 미니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밀학교를 분산시키려고 그랬는데 학교 설립이 어렵잖아요, 인허가가. 그래서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새로운 법안을 근거로 해서 과밀·과소에 대한 뭔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교육청을 많이 들락거리면서 얘기를 했고, 교육 전문가들이 두 가지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 가지, 특히 반대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저의 의견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요새 시대에 학부모, 학생, 교사가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린스마트학교 아니에요? 그린스마트학교가 몇백억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도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여러 수도권에서 진행이 안 됐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완 입법 분명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제정법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려하셨던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은 다 타당한 지적이세요. 다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두면 여러 가지 보완점을 또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하여튼 오늘의 공청회는 저는 매우 만족할 수준의 공청회였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 네 분 모두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듣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교육청 또 교육부도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진술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과 공무원들이 입실하고 의안을 배부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10분만 정회할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상임위를 속개하겠습니다.

○ 현안질의

○위원장 김영호 아까 상임위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태 등에 관하여 교육부 보고를 먼저 듣고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장관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학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세대 논문 문제 유출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가 실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응시생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에서 오늘 오후에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2일에 실시된 논술시험에 따른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합격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12월 중으로 실시될 추가 시험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2쪽, 부경대 학내 정치 시위 관련 사항입니다.

10월 30일 한 대학생 단체에서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추진을 위해 학내 일대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경대는 시설물 허가 지침에 의거하여 불허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대학 본관에서 11월 7일부터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11월 9일 20시 30분경에 농성단과 별개의 외부인 60명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앰프를 통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야간에 학내 소란 행위가 발생하여 대학에서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학생 농성단과 외부인 일부가 신원 확인에 불응하여 경찰 연행 조치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내 규정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경대에서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정치행사 목적의 시설물 사용을 불허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추후 교육부에서는 인권위 권고를 각 대학에 제안하여 관련 내용을 환기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6쪽,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동덕여대는 대학의 장기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해 총장 직속으로 대학비전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11월 5일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방안에는 두 단과대학의 남녀공학 전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11월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전면 철폐를 요구하며 건물 점거, 수업 거부 등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21일에 이르러 동덕여대와 중앙운영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및 수업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동덕여대는 시위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내 비상상황에 따른 수업운영지침을 공지하였으며 상당수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덕학원의 경우 남녀공학 전환 검토 사안을 사후에 인지하였으며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바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동덕여대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과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지만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일부 언론에서 동덕여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관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지만 학교에서는 현재 내부 법률 검토 단계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주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을 간단히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몇 분들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장관님께 부경대학의 학내 정치 시위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보고드린 대로 부경대가 시설물 사용 불허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고요.

○**김준혁 위원** 장관님 판단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 소명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장관님, 4·19 당시에 학생들의 행위가 정치행위입니까 아니면 폭력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4·19를 폭력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헌법전문에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박정희·전두환 시기에 대학 다니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준혁 위원** 그때 장관님이 다니셨던 대학의 아크로폴리스에서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나라고 시위할 때 그것이 정치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민주화운동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이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정권에 계신 분들이 대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 행위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학의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학생들의 몸부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까지 불러 가지고 진압한다. 아니, 대학 내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수도 없는 집회를 하다가 잡혀가면 교수님들이 노량진경찰서 용산경찰서 와서 학생들 다 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총장 혹은 대학교수들의 행위보다 못한 모습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걸 좀 더 포용적으로 봤어야 정상인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 표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인이 학내에 들어와서 소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걸 학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경찰이 출동해서, 또 연행된 사람들은 신원 확인 후에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김준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다닐 때도 노동자들도 오고 여러 단체분들도 오고 했습니다. 이건 꼭 이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신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본관 점거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 당시 학생들의 문제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에서 일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에서 이렇게 했다, 지금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학교 내부에 분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 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이걸 했다고 해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는 정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육자로서 너무나 잘못된 행위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는 장관님의 유감 표명도 유감 표명이지만 국립부경대 총장의 국회 출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동덕여대는 수천 명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에 경찰들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부경대는 8명 10명 안팎의 집회인데 강경 진압했거든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이라는 현안에 대한 집회, 국립부경대는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집회, 이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사실 80년대 공안정국이 연상된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서 오늘 특별히 국회에 보고까지 해 주셨지만 국립부경대 총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연세대 논술 문제도 사실 오늘 연대와 교육부가 잘 협력해서 결단해서 다행인데,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 시기를 잘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덕여대는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의 인권 또 안전 좀 잘 계속 쟁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계속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부경대 사태에 대해서, 이건 사태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특히 대학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 안 맞는지에 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그런 의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보내 주신 이 보고 자료에서 좀 놀란 게 농성에 외부인 6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대학생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외부인이라 하시면 교직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시위를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외부인들에게 학교에서 퇴거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거부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맞습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끼리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해서 정치의 자유를, 발언의 자유, 정치적 의견의 입장 표현하는 것 저는 100% 동의하고 어떤 쓴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학에 주어진 자유고요.

다만 지금 8명 농성하고 있는데 이것의 한 열몇 배 되는 60명이, 9배 되는 60명이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고 대학 측에서 안전을 위해서 나가 달라고, 충분히 해야지요, 하는 과정에서 60명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앰프를 통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함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질서유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외부인이 대학에 와서 대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대학의 자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군사독재 시절에 대학의 소중한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 또한 짧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사복 경찰이 들어오는 것도 싫었지만 외부인이 들어와서 우리 대학생들을 선전선동하는 건 더 싫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해주시되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또는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외부인, 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외부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단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참고로 정부 측도 향후 일정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딱 한 분만……

○**고민정 위원**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고민정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바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이번 부경대 사건에서 충격이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외부인이나 아니냐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장관님이나 위원님의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학내에서 그리고 종교시설 특히 명동성당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당 다니는 신자들만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동성당에 몸을 숨겼던 그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야 맞나요?

물론 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이 학교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런 곳에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법에 다 적어 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과도한 경찰력이 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이라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지요. 교육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유감 표시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리고 앰프를 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문제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 경내에서 맨날 앰프 틀고 소리 지르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진압해야지 맞나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외부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 혹은 앰프를 튼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끝까지 장관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두 분 또 정말 학생의 민주화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고요. 다만 민주화 시대에 적법하게 또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 적법성을 어긴 부분이 있어서 대학이 조치로 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향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계속 정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드릴 말씀이 있지만 더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법률안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 법률안 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백승아 위원 AIDT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죄송한데 좀 마지막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백승아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4.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1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0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3항부터 26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1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7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며, 둘째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학칙에 따른 보장은 삭제하고 교원에 대한 보장 내용이 명료화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훈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둘째 대안교육기관이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은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변경하려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교육부장관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하여 위촉 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 재산 무상대부 특례 대상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민정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학업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히 심사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6조(명칭), 제7조(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교육과정), 제9조(학생자치활동) 제10조(교직원)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학교급식), 제13조(학교운영의 통합·분리)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3항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까지 8항까지 5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을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부터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제14조(연수),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19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26항까지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및 16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7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부터 2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2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및 25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2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의 있으세요?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전원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간략히 밝히고 입장과 그다음에 저희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서 사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그 취지에 대해서 읽어도 읽어도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 봤지만 첫째 우리 헌법 31조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에 교육제도와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교육제도에 교과서제도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헌법재판소 92년 결정에 의하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법 157조는 교과서, 교과형 도서의 저작·검정·발행·공급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교과서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부는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로 열심히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안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8부 능선을 넘어온 이 마당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 많은 교과서 회사들이 지금 같이 협업하는 이 마당에 지금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공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제 주장뿐만 아니라 전국지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렇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지역 및 학교별 도입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자격을 잃고 교육자료가 되면 교과서에만 부여되는 저작권법의 조항, 저작권법 제25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고시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게 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이 교육자료 또는 교과서가 정말로 비싸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과 사용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 간의 교육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소급 적용을 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25년 적용되기 위해서 거의 다 온, 하루이틀 남은, 지금 29일이지요, 이를 뒤에 검정 합격 공고 예정인 가운데 이 부칙을 적용해 버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스워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믿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에듀테크업체, 우리 국민들이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 업체에는 큰 피해가 가고 저는 출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짐작합니다.

어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의 19개 단체가 모두 국회에 와서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법적 지위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매우 익숙한 해냄 같은, 역사 교과서로 저희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해냄 교과서조차도 저희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큰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법률소위에서는 저희가 의결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여러 이유로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야가 이렇게 침예한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의견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의결하지 말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기를 요구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조정훈 위원 등 여섯 분이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지금 의결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서 선임합니다. 두 분 간사님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로 AI 교과서 도입 일정 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국어 및 기술·가정 과목은 아예 철회하는 등 도입 과목과 시기를 대폭 조정하고 있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장관님께서 AIDT 청문회를 열어서 실물을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데 결국 AI 교과서 도입 연기로 방향을 잡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장관님 답변을 지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인프라도 점검해 보니까 디바이스 보급, 성능, 인터넷 속도, 지원인력 이런 것들이 진단해 보니 지역별 격차도 너무 컼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거든요. 업무 부담도 커지고요.

그런데 이 AI 교과서 도입 연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솔직히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기까지 온, 이 교실 대란을 만든 책임 또 수천억의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AI 교과서 검정 발표되면 공청회 자리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럴 시기가 아니고 이 도입 연기가 사실이라면 AI 교과서 도입부터 추진 과정, 예산집행 과정, 그 결과 또 검정 심사 또 도입 연기 결정까지 현안보고를 저희가 받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열든지 해서 단계별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희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현안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열든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AIDT가 청월 요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행정실장 김정규 도입 여부에 관한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여부는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백승아 위원님의 질문에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언론 건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발표를 할 때 과목 조정에 대한 건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의원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왔었고요.

또 특히 교육감님들하고 여러 차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25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를 저희가 갑자기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2026년 이후에 도입되는 교과목 조정을, 그 가능성을 저희가 국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워낙 중요한 변화이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국회와 협의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AIDT의 대상의 주체가

학생·학부모·교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왜 그런 소비자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조사를 안 하시지요, 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생·학부모·교사와도 정말 어떤 정책보다도 더 많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그런 통계를 왜 국회나…… 정부가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AIDT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직접 물어보고 반응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고민정 의원실 자꾸 제가 언급을 해서 죄송하지만 고민정 의원실이 몇 달 전에 한번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실은 개인 의원실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은 질문을 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왜 정부의 추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감안하고 또 수정하면서 이걸 추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특히 이게 검정 과정하고 연결이 돼서 검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사전조사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동의해 줄까. 저는 특히 AIDT의 대상들이 지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도입해서 선보였을 때 만약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제약이 있지만 최대한 그 제약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꼭 좀 감안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늘 의결한 법안에 관해서 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산회 전에 위원님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여러 위원님들과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여야 위원님들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정책개선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친전을 보내 드렸고요.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끌어낸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안에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드린 약속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속한 것처럼 밥값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습을 보여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안 심사, 예산심의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장애인 통합교육 또 다문화가정 통합교육을 같이 지켜보면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장애인 교사와 장애인의 비율을 좀 줄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과, 장애인 문제와 다문화가정의 통합교육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안의 배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오늘 중에 제1차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실에서 회의 안내를 할 예정이니 조정위원 후보자분들은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경내나 가까운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가 대기에는 익숙하니까요 좀 대기를 해 주시고요.

○조정훈 위원 오늘 회의를 하자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그건 합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아까 제가 보니까 법안 회부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252 법안이 들어왔는데 소위에 계류된 게 182건입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들께서 법안소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주셔서 우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도 법안소위 들어오시면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는, 불러만 주십시오.

그래서 법안소위에 조금 더 중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장 위원(2인)

김대식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출석 진술인

박진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연취현(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현영(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이화룡(공주대학교 명예교수)